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5. 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1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5월 7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
- 2)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함
 -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긴급한 경우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3)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기간의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

4)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역량,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

5)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실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6)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4조)

-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실시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인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마포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15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함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 지방의회 추천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고
-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긴급한 경우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사항에 관하여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 체결하고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기간의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 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실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동(同)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민법, 상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설립 절차 및 지도·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적용할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4년 9월 25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마포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15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2015.3.12.~ 4.1.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4. 3. 24.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 기준을 정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을 시달한 바, 2015. 5월 현재 서울시 성동구외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출연기관 이라고 함은 마포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뜻하는 출연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또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지방의회에서 추천 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은 3명 이내로 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범조계 등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였고, 운영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에 대한 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 할 대상으로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의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경영평가단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선정되어 경영평가를 할 수 없도록 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두는 등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同)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